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초음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홈페이지(초음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를 통해 분양일정,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전·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1-554-2979)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청야과열지역으로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시 LTV가 50%로 제한되며, 2주택이상 다주택 세대는 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신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하여야 하고, 무주택세대는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에 한함)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 35605호(2022.06.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29-14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124.0000㎡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2층 4개동 116세대(아파트 96실 포함) 중 도시형 생활주택 총 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118대 중 도시형생활주택 20대(세대당 1대)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도시형 생활주택	049.6397A	49A	49.6397	17.3778	67.0175	33.0902	100.1077	29.5090	20
			합 계						2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비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 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및 청약 신청 자격

- 해당사항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원 / 부가세 포함된 금액)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22.08.16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입주지정 기간 내)	
											22.10.04	23.01.02	23.04.03	23.07.03	23.10.02	24.01.02		
49A	20	104동	1~3층	12	52,848,860	220,801,140	-	273,650,000	10,000,000	17,365,000	27,365,000	27,365,000	27,365,000	27,365,000	27,365,000	27,365,000	27,365,000	82,095,000
			4층	4	52,848,860	226,881,140	-	279,730,000	10,000,000	17,973,000	27,973,000	27,973,000	27,973,000	27,973,000	27,973,000	27,973,000	27,973,000	83,919,000
			5층	4	52,848,860	230,931,140	-	283,780,000	10,000,000	18,378,000	28,378,000	28,378,000	28,378,000	28,378,000	28,378,000	28,378,000	28,378,000	85,134,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001제곱미터(m²)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서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서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공유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측량결과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아파트 49B(확장형), 59A(확장형)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59B, 59C, 97A 및 도시형생활주택 49A)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은 계약시 일부 지정금액(1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자(2022년 08월 16일)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계좌는 본모집공고의 계약체결 목차의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계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대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주택의 분양조건(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금 미납,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해당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체결 기간	계약기간 종료일	장소
2022년 06월 13일(월) 부터	선착순 계약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래구 온천동 1750-33, 2층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대지면적 및 마감재 변경 동의서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 납부(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 후 전자수입인지 사본 제출 (원본은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공급계약서와 같이 보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도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원관계 확인,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체결 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료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본 주택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외부공간 불법 건축물 설치 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지세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49401-04-31413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3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301 홍길동]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301호 계약자 → '1011301 홍길동' / 102동 802호 계약자 → 1020802 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시행위탁사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 시 시행위탁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에 할 수 없음.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사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시행위탁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사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시행위탁사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 지급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이자 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에 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관계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입차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음.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령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 행위 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짐.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짐.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예정일 : 2024년 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제 입주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능 한 날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사전점검 대상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배 공사, 도장 공사, 가구 공사, 유리 공사, 타일 공사, 주방가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또는 공급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혹은 시행위탁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발송)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카페 겸용) 및 맘카페, 독서실 (단,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주민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1개소), 자전거 보관소(10인승/4개소)

■ 주차장 출입 가능한 높이 제한 : 2.5M

■ 주차장 차로(주차면) 높이 : 2.3M 이상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Ⅲ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고상 타입)	49A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	12,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상 명시 예정임.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중도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 시 (입주지정 기간 내)
49A	12,000,000	1,200,000	10,800,000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비용(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49401-04-31413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구조 검토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사형제조사, 브랜드 및 난간,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할 경우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무상제공품목

구분		비고
가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삼성(AJ040MB1PBC1) 1개소 (거실)
	광파 전기오븐(스마트 오븐)	삼성(HSB-N361B) 1개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 (발코니 미확장시 제공되지 않음)

※ 상기 무상제공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무상제공되는 품목으로, 발코니 미확장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후 무상제공되는 품목에 대한 비용의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은 유상제공품목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과 동일하며,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49A	비고
가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택1	삼성(AJ040MB1PBC1) 1개소 (침실1)	3,025,000
			삼성(AJ040MB1PBC1) 2개소 (침실1,2)	3,817,000
			삼성(AJ040MB1PBC1) 3개소 (침실1,2,3)	-
마감	하이브리드 쿨탑	택1	한샘 BIH3471	660,000
			파세코 BIH3471	550,000
			그랜디(일반형)노출레일/브론즈 5T강화유리,블랙	990,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중문	택1		아델리오(고급형)노출레일/브론즈 8T강화유리,블랙	1,375,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	기업은행	093-116710-01-015	(주)경보산업개발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체결 후 별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특정일 한해 별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해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주택의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 시 실제 설치 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단열재 적용범위,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및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를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공유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 측량결과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적확정 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주택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세대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민들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유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확장형 선택 시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49B(확장형), 59A(확장형)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확장기본형(유상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견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운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홍통, 위생기구류, 약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 에어리어,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단지모형, 커뮤니티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 등 포함),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단지 내 실제 계획고에 의한 시공으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환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 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 전시세대 내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은 연출용 전시조명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홍보물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건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건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건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 선풍통, 위생기구류, 약세사리류,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건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벽면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됩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주방 상부장은 천장에서 이격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환기,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시스템 적용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 및 분배기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방)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기본형은 세대환기 장치가 노출되어 시공될 예정임)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자동형 제품으로 에어컨 작동시 실외기 동작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고 실외기 정지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입니다.
- 각 세대별 전기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전기시설) 제1항에 따라 계획하였고, 간선설비등은 “내선규정” 부록[표300-2-1. 간선의 수용율 표의 2. 분양주택, 고층주택(전기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의 수용율 표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옥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흠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화장 또는 비화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아트월 타일 및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 및 주방벽체)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의 세탁부스탁, 부부욕실의 샤워부스탁은 타일구배에 따라 그 높이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복도 및 거실에 설치되는 아트판 줄눈의 폭,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육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창호는 안방 외창, 거실 외창 및 거실 측면(해당세대) 외창은 입면분할창이 설치되며, 기타 침실, 배면부에 설치되는 각부의 창호는 일반 발코니 창호가 설치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튼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벽면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됩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주방 상부장은 천장에서 이격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환기,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시스템 적용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 및 분배기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방)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본형은 세대환기 장치가 노출되어 시공될 예정임)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자동형 제품으로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 동작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고 실외기 정지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입니다.
- 각 세대별 전기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전기시설) 제1항에 따라 계획하였고, 간선설비등은 “내선규정” 부록[표300-2-1. 간선의 수용용 표의 2. 분양주택, 고층주택(전기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의 수용용 표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상호 사양은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 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 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 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 시보다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내측 창호 하부에 골조턱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그릴창 및 방화도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 성능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틱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함.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가변형 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입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및 거실벽의 인조대리석 마감 시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도배지, 천장지, 마루, 타일 등)
-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방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개별난방이 시공 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CG, 모형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공사 시 공사여건 및 심의 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하층에 비확장세대가 있을 경우 천장, 바닥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람(개폐)방향, 날개 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 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벽/바닥, 주방 벽/바닥,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화장실의 높이 및 바닥 높이는 바닥재 마감구배와 천장 배관설치 등으로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거실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은 설치 불가함)

■ 기타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본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의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치, 수량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 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외부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을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등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등급상 또는 등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행위탁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의 부지면적은 각각 별도로 분할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X 기타 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세 포함된 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상호	(주)조양종합건축사사무소	청목플러스(주)	(주)부흥이앤씨
감리금액	270,600,000	39,600,000	46,2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07-81-61210 (180111-0423870)	181-86-01923 (180111-1334141)	605-81-75358 (180111-0540096)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 제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 중요도 I	VII - 0.243g

※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함.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분 설계기준(제1호)	간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득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분양보증을 받은 본 주택의 사업장 공사진행에 대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 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2-101-0005900호	₩3,876,488,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 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임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실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실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사업장 공사진행에 대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1566-9009)

■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자는 공급자 "갑"(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사 "정"(주식회사 경보산업개발), 책임준공 시공사인 "병"(한동건설 주식회사) 등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 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1) 공급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2) "을"은 반드시 공급대금을 본 계약서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갑" 명의의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을"은 본 공급대상물건이 신탁법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정")와 수탁자("갑")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이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이 경우 "갑"은 매도인(수탁자)으로서의 모든 의무에서 면책된다.
- (4) 공급대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갑"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갑"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갑"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 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병"에게 있고, 매도인(사업실행자)으로서 일체의 의무는 "정"에게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추후 "갑"에게 어떠한 요구 및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5) "을"은 "갑"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책임은 "병"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 명칭변경 포함)교체 시 "을"은 이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정"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와 관련하여 "을"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7) 위탁자 "정" 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갑"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인과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인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인이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인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 계약 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을"이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을"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상표 및 상호 사용**

본 주택은 2021년 12월 23일 월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월드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경보산업개발(이하 "경보산업개발"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29-14번지 일원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표 및 상호사용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표 및 상호 사용 계약을 수 분양자에게 별도 고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

1. (주)월드건설산업은 월드메르디앙 브랜드 제공과 함께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며 본 사업의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의무와 함께 공급 주택의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2. (주)월드건설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사, 금융권 및 수분양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사업관계사**

구분	사업주체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사업관리사	분양대행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보산업개발	한동건설 주식회사	월드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에이치홀딩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27번길 7, 1층(당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 501(연무동, 한동빌딩)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32, 상가동 2F 202호(운양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11, 2층(삼성동)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81-67944 (110111-1348237)	231-87-02113 (180111-1347491)	135-81-01930 (130111-0001212)	134-81-12128 (110111-0400856)	217-81-48182 (110111-5627710)

<p>건본주택(홍보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33, 2층</p>	<p>계약체결</p> <p>2022.06.13.(월) 이후</p>
	<p>계약기간 종료일</p> <p>선착순 계약</p>
	<p>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p> <p>http://초음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p>
	<p>분양문의</p> <p>051-554-2979</p>

-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목욕표 등)는 홈페이지 및 사전예약을 통한 견본주택에서 관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초음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